

제 호

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서

기관 명칭

전화번호

소재지

대표자 성명

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보건복지부장관

직인